

# 2022년도 개정 노동관계법 안내(예원 노무법인)

## 1 '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화' 전면 시행

### 1. 관공서 공휴일의 의무 적용(근로기준법 제55조)

기존	변경
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, 공공기관에 한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	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. →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불가, 해당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 지급,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 가능

### 2. 관공서 공휴일의 종류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</li> <li>- 1월 1일</li> <li>-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</li> <li>- 부처님 오신 날 (음력 4월 8일)</li> <li>- 5월 5일 (어린이날)</li> <li>- 6월 6일 (현충일)</li> <li>-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 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</li> <li>- 12월 25일 (예수님 오신 날)</li> <li>-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</li> <li>-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</li> <li>- 대체공휴일</li> </ul>
---

### 3. 시행일자

2022. 1. 1.자

## 2 최저임금액 및 산입 범위의 확대

### 1. 최저임금액의 변경

기존	변경
----	----

- 시급: 8,720원 - 월급: 1,822,480원	- 시급: 9,160원 - 월급: 1,914,440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2.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(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)**

**가. 산입 범위의 확대**

기존	변경
- 현금성 복리후생비: 3% 초과분 -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 상여금: 15% 초과분	- 현금성 복리후생비: 2% 초과분 -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 상여금: 10% 초과분

**나.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준의 산정**

① 현금성 복리후생비: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의 2%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

예시 1) 기본급이 3,000,000원이고, 식대가 150,000원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

구분	금액(단위: 원)
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	1,914,440원
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2%	38,289원
식대(150,000원)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	111,711원
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	3,111,711원
산출 시급	14,889원

예시 2) 기본급이 3,000,000원이고, 식대가 100,000원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

구분	내용
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	1,914,440원
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2%	38,289원
식대(100,000원)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	61,711원
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	3,061,711원
산출 시급	14,650원

②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: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의 10%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

예시 1) 기본급이 3,000,000원이고, 정기상여금이 500,000원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

구분	내용
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	1,914,440원
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10%	191,444원
상여금(500,000원)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	308,556원
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	3,308,556원
산출 시급	15,830원

예시 2) 기본급이 3,000,000원이고, 정기상여금이 300,000원인 경우의 산입범위와 시급 산출

구분	내용
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액	1,914,440원
최저시급 기준의 월 급여액의 10%	191,444원
상여금(300,000원)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	108,556원
최저시급에 산출되는 임금 총계	3,108,556원
산출 시급	14,874원

### 3. 시행일자

2022. 1. 1.자

## 3 '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' 전면 시행

### 1. 변경 내용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)

기존	변경
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	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전면 적용

### 2.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

구분	내용
신청 요건	1.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. 본인의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.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.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
단축 후 근로시간	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하
사용 기간	1년 이내로 하되, 합리적 사유 존재 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

### 3. 시행일자

2022. 1. 1.자

##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### 1. 주요 내용(중대재해처벌법)

구분	내용
내용	-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- 중대산업재해 :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,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,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벌칙	- 사망 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- 상해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- 재범 :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50% 가중

### 2. 시행일자(단계별 적용)

적용 시기	적용 사업장
2022. 1. 27.자	-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2024. 1. 27.자	- 개인사업자 -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-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

※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정)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는 미적용

## 5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

### 1. 변경 내용

기존	변경
3.4%	3.6%

※ 민간기업은 3.1%로 동일

### 2. 시행일자

2022. 1. 1.자

## 6 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준수 의무 신설

### 1. 변경 내용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3항,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)

기존	변경
신설	-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기준책임준비금 100%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,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2. 시행일자

2022. 4. 14.자

## 7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의무 신설

### 1. 변경 내용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의2)

기존	변경
신설	-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,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,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매년 1

	회 이상 작성 -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,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-	--

※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방안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

**2. 시행일자**

2022. 4. 14.자

## 8 고용상 성차별,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

**1. 변경 내용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)**

기존	변경
-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관한 처벌 규정만 존재 - 별도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 부존재	- 고용상 성차별 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신청 가능 -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신청 가능

**2. 시행일자**

2022. 05. 19.자

## 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

**1. 변경 내용(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)**

기존	변경
-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'가사 사용인'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미적용	- 가사근로자를 고용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, 유급휴일, 휴가 부여,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 부여 - 가사근로자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계약 내용 외의 업무 요구 금지,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 보호,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및 휴가 부여 등의 의무 부여

2. 시행일자

2022. 6. 16.자

**10** **사업주 휴게시설 설치의무 등 신설**

1. 변경 내용(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)

기존	변경
- 휴게시설 설치·운영 가이드(고용노동부,2018)로 권고	-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과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·관리 기준 준수 -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,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입법예고 예정

2. 시행일자

2022. 8. 18.자

**11** **임신근로자 출·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시행**

1. 변경 내용(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)

기존	변경
-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근거규정 부존재	-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

2. 시행일자

2021. 11. 19.자

## 12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시행

### 1. 변경 내용(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)

기존	변경
-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허용	-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

### 2. 시행일자

2021. 11. 19.자

## 1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

### 1. 변경 내용(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)

기존	변경
-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부존재	-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,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교부하여야 함 -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# 2. 시행일자

2021. 11. 19.자

## 14 계약기간 만료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

### 1. 변경 내용(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)

기존	변경
신설	- 근로계약기간 만료,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될 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가능

**2. 시행일자**

2021. 11. 19.자

## 15

###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인상

---

**1. 변경 내용(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)**

기존	변경
-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	-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, 이행강제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

**2. 시행일자**

2021. 11. 19.자

## 16

###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

---

**1. 변경 내용**

기존	변경
-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	-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'육아휴직 지원금'을 월 200만원 3개월간 지원 (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월 30만원 지원)
-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최대 월 80만원 지원	- 현행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
- 대규모기업에 대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월 10만원,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월 30만원 지원	-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폐지

**2. 시행일자**

2022. 1. 1.자

## 17 육아휴직급여 인상

### 1. 변경 내용

기존	변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%(상한액: 월150만원),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%(상한액: 월120만원) 지급</li> <li>-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: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: 월250만원) 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80% 지급(상한액: 150만원)</li> <li>- 3+3 부모 육아휴직제 :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 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: 월300만원) 지원</li> </ul>

### 2. 시행일자

2022. 1. 1.자

## 18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

### 1. 변경 내용

기존	변경
<p>신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</li> <li>- 고용 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보다 증가한 경우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</li> </ul>

### 2. 시행일자

2022. 1. 1.자

## 19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

### 1. 변경 내용

기존	변경
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지원</li> <li>-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, 최대 1년간 월 80만원 지원</li> </ul>

### 2. 시행일자

2022. 1.경 시행 예정

## 20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신설

### 1. 변경 내용

기존	변경
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</li> <li>- '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남성, 여성 및 중증 정도에 따라 월 30만원~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</li> </ul>

### 2. 시행일자

2022. 1. 1.자

## 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경

### 1. 변경 내용

구분	기존	변경
지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	30인 미만	좌동

대상 근로자 월 평균 보수	219만원 이하	230만원 이하
지원 금액	- 5인 이상: 50,000원 - 5인 미만: 70,000원	- 전 사업장 : 30,000원
지원 기간	- 12개월	- 6개월

**2. 시행일자**

2022. 1. 1.자

## 22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의 변경

**1.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변경**

구분	기존	변경
건강보험	6.86%	6.99%
장기요양보험	11.52%	12.27%

**2. 시행일자**

2022. 1. 1.자

## 23 고용보험료율 인상

**1. 고용보험료율 변경**

기존	변경
- 1.6%	- 1.8%

※ 근로자 사용자 각각 0.9%

**2. 시행일자**

2022. 7. 1.자

「 끝 」